

민생법안 빠르게 진행하자

발표자: 조성빈

contents

◆1. 개요

◆2. 안건소개

2-(1). 법안 명칭

2-(2). 교체 내용

2-(3). 주요 교체 내용

◆3. 기대효과

개요

- ◆ 현재 법사위로 인한 계류법안이 약 **1400여개**에 이르고 있음.
- ◆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중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수정할 수도 있음.
- ◆ 또한 의원수(**10명**)에 비해 턱없이 많은 처리법안들이 무수히 많아 비효율적임.
- ◆ 이러한 비민주적인 법사위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법안 명칭

민생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청원안

국회법 제37조-2

현	신
<p>2. 법제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p>2. 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사 항목 삭제></p> <p><중략></p> <p>18. 법제위원회</p> <p>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국회법 제39조

현	신
<p data-bbox="191 478 356 521"><중략></p>	<p data-bbox="1274 478 1439 521"><중략></p> <p data-bbox="1274 592 2280 692">⑤ <u>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의원과 검수 위원(검수 위원은 외부 인사로 한다)으로 한다.</u></p>

국회법 제42조

현	신
<p>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중략></p>	<p>① <u>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중략></p>

국회법 제44조

현	신
<p data-bbox="191 478 305 506"><중략></p> <p data-bbox="191 549 1235 699">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p> <p data-bbox="191 742 305 771"><중략></p>	<p data-bbox="1274 478 1388 506"><중략></p> <p data-bbox="1274 549 2318 699">③ <u>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u></p> <p data-bbox="1274 742 1388 771"><중략></p>

국회법 제48조

현

<중략>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신

<중략>

- ④ 법제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검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수 위원은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 추천을 통한다.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수의 변화가 생길 경우 법제위원회의 의석은 국회 규칙에 따른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7조의 2

현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중략>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중략>

신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중략>

⑨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중략>

국회법 제58조

현

<중략>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중략>

⑩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59조

현	신
<p data-bbox="63 449 224 492"><중략></p> <p data-bbox="63 564 1210 664">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p> <p data-bbox="63 735 224 778"><중략></p>	<p data-bbox="1274 449 1434 492"><중략></p> <p data-bbox="1274 564 2433 664"><u>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u></p> <p data-bbox="1274 735 1434 778"><중략></p>

국회법 82조의2

현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
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
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
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 2

현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신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85조의 3

현	신
<p><중략></p> <p>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중략></p> <p>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중략></p>	<p><중략></p>

국회법 제 86조

현

-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신

-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략>

국회법 제 130조

현

-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신

-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중략>

국회법 제 131조

현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신

① 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주요 교체 내용

현	신
<p>2. 법제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p>2. 사법위원회</p> <p>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p> <p>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p> <p>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p> <p><사 항목 삭제></p> <p><중략></p> <p>18.법제위원회</p> <p>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p>



법제사법위원회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법제위원회



1. 형식과 자구
심사(법안 심사)
2. 국회규칙안의 체계 등

사법위원회



1. 법무부, 법제처,
헌재에 관한 사항 등
2.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현

신

<신설>

④ 법제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은 제1항과 2항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 검수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수 위원은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 추천을 통한다.

법제위원회 의석 배분

교섭단체



의석 수에 비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석 수에
반비례하게 검수 위원 선임

비교섭단체



의장이 선임



선임된 비교섭단체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의장이 선임

For Example

구분	A당 (여당)	B당	C당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4명	3명	2명	1명
검수 위원	1명	2명	3명	4명

의사정족수: 4명 의결정족수: 전원 출석 가정 하에 11명

기대효과

- ◆민생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발판을 마련 해주어 궁극적 목표인 **민생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음.
- ◆기존 거대양당의 막강한 권한을 타(他)당 의원들로 하여금 견제할 수 있음(=**민주주의 발전**)

감사합니다.